
보충 설명

1. 지급결제 프로세스	67
2. 금융시장인프라	69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71
4.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73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76
6. 외화의 지급 및 결제	78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79

보충 설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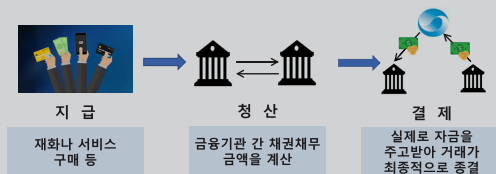
지급결제 프로세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이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금을 제외한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수단이다. 이러한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채권·채무관계 종결을 위해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현금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은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청산,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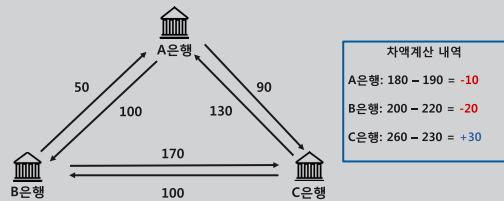
(지급)

지급은 지급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지급수단을 통해 예금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즉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주거나 지급카드를 통해 청구권의 이전을 의뢰하거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산)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예금반환청구권)을 확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해 결제를 위해 제시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포함된다.

청산 과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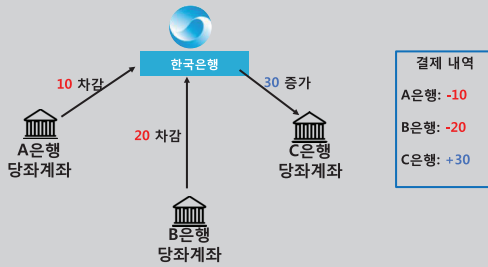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결제)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이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최종 결제(예시)



자료: 한국은행

보충 설명 2.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는 시스템 운영기관을 포함한 참가기관들 사이의 다자간 시스템으로 지급,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기능에 따라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결제시스템)

자금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를 위한 수단, 절차 및 규정의 집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증권거래,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한은금융망이 이에 해당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결제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를 주로 처리한다.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장한다. 또한 다자간 차감을 통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예탁자 계좌부의 계좌대체를 통해 처리한다. 계좌대체 방식의 결제는 실물증권의 이전에 의한 결제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증권의 분실, 도난 등의 리스크가 없다.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은 장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이전을 통해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결제는 증권(대금)을 인도(지급)했지만 대금(증권)을 지급(인도)받지 못하는 원금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결제와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거래정보저장소)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거래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래정보의 수집, 저장 및 배포를 집중함으로써 금융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남용의 포착 및 방지를 지원한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금융시장인프라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유동성 부족 및 신용 손실과 같은 금융충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BIS CPMI와 IOSCO는 국제기준으로서 PFMI를 2012년 4월

16일에 공표했다.¹⁾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G20 및 FSB 회원국 간 합의를 반영한 간접적 이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와 유관당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 지급결제 환경 및 법규체계 등을 고려하여 동 원칙을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준 및 관련 규제·감독·감시기준에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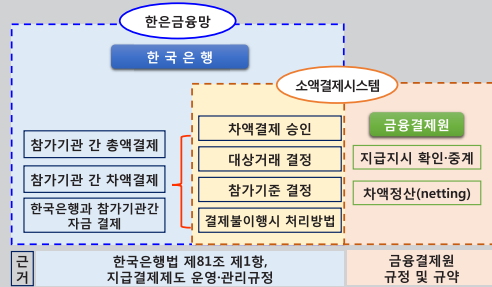
1) BIS CPMI(당시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와 IOSCO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2001.1월),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2001.11월) 및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2004.11월)를 지급결제분야의 3대 국제기준으로 수립·운용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FSB 등을 중심으로 금융불안 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부터 BIS CPMI와 IOSCO는 기존 3대 국제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여 2012년 4월 PFMI를 공표했다.

보충 설명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¹⁾ 간 연계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이에 근거한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왔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자료: 한국은행

이에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해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참가기준 결정,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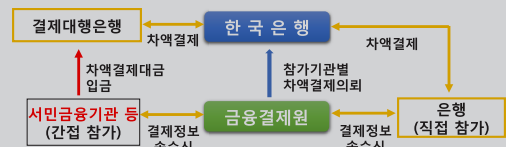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자사가 운영하는 개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참가기관 간 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최종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에 대한 차액결제 허용 여부와 대상거래를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어음교환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간 거래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차액결제 방식으로 최종결제 되고 있다.

(참가방식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참가기관인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반면 간접참가기관인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은 은행이 차액결제를 대행해주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방식



자료: 한국은행

1)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사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시 참가기관이 차액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활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차액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충 설명 4.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차액결제와 결제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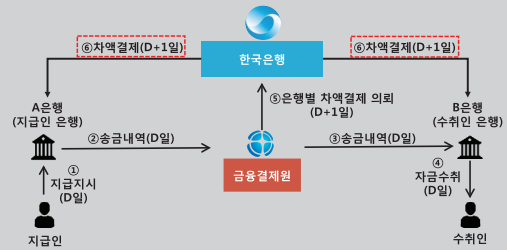
차액결제는 실시간 총액결제와 달리 일정 기간 중 일어난 은행 간 자금이체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해 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액결제 방식에서는 거래일 영업 마감 후 또는 다음 영업일 등 지정시점에 은행 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은행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한 은행은 자금 지급시점부터 차액결제 종료시점까지 상대방 은행에게 신용 대출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지정시점에 차액결제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방 은행에게까지 유동성리스크를 전가시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차액결제 방식은 자금거래를 건별로 실시간 결제처리하는 총액결제 방식과 달리 신용리스크는 물론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요구되었다.

차액결제 프로세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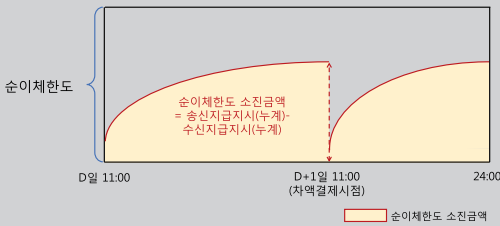
(순이체한도 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 공동망 등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인의 지급지시 즉시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동 지정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전일 지급한 자금을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간의 순이체한도(순채무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기관이 다른 참가기관에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는 지급지시를 전송하면 동 금액만큼 지급기관의 순이체한도가 차감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자금이체 지급지시를 수신한 금액만큼 수신기관의 한도가 복구된다. 참가기관은 송신지급지시 금액에서 수신지급지시 금액만큼을 상계한 순채무금액을 다음 영업일 11:00시에 최종결제한다. 순이체한도는 은행별로 자율 설정하고 있으며, 동 한도의 소진율이 100%에 이르면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가 중지된다. 은행은 순이체한

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함으로써 일중 미결제된 순이체액의 규모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차액결제 순이체한도 제도



자료: 한국은행

(사전담보 제공)

한국은행은 은행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와 연동해 일정 규모의 우량채권을 사전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익일(D+1) 차액결제시점(11:00시)에 특정 은행의 자금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사전에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한국은행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결제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담보로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은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해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2023년 7월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지방채, 공공기관채 및 우량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전담보 납입비율은 순이체한도 규모의 80%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

문의 국제기준(PFMI)을 준수하기 위해 동 비율을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순이체한도가 100% 소진된 상황에서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기납부한 담보를 처분해 결제를 이행할 수 있어 차액결제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게 된다.

(손실공동분담)

차액결제 시점에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해 한국은행이 사전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음에도 결제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완료하게 된다. 은행별 결제부족자금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의 사전담보 납입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향후 한국은행이 국제기준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2025년 8월 예정)하게 될 경우 손실공동분담 제도는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차액결제 대행제도)

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2004년) 및 금융투자회사(2009년)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 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정적인 차액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시점에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이 차액결제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 대행은행은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자신의 순채무액 뿐 아니라 위탁기관의 순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결제하며, 위탁기관은 대행한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대행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대행은행이 급격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거나 영업정지, 파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차액결제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이 직접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실시하게 된다.

보충 설명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¹⁾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의 결제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분석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 징후(결제 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등)를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셋째,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넷째,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과 무제한 공

급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소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23년 말 기준 한은금융망을 포함해 10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고 결제규모 등을 고려해 22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란 다양한 결제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 상태를 지칭한다.²⁾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은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

1)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s a central bank function whereby the objectives of safety and efficiency are promoted by monitoring existing and planned systems, assessing them against these objectives and, where necessary, inducing change." (BIS CPMI,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월)

2)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FMI '1.0 Introduction'의 'Public policy objectives: safety and efficiency' (§15~§18)을 참조하기 바란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구 분		운영기관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10개)	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타행환 전자금융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기관간Repo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CLS시스템 ¹⁾	CLS은행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22개)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CD
			자금관리서비스
			B2C 전자상거래
			B2B 전자상거래
			직불카드
			지방은행
			국가 간 공동망
	오픈뱅킹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지급결제시스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위안화 청산시스템	교통은행 서울지점		

주: 1)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조적 감시업무를 수행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양적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은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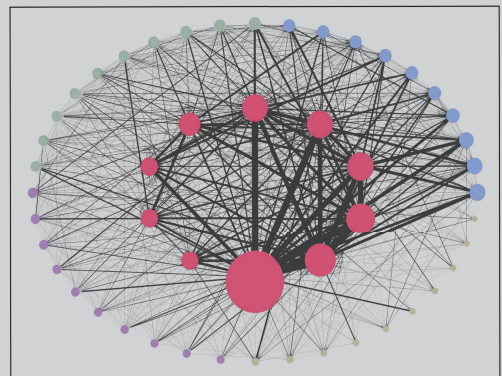
요시 참가기관에 대해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한은 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정기적³⁾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PFMI 이다. 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PFMI는 리스크 통제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한은금융망 자금결제 모니터링 화면

● 거래금액 상위 20% 기관 ● 상위 20~40% ● 상위 40~60%
● 상위 60~80% ● 상위 80~100%



주: 1) 원형 노드는 참가기관, 실선은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 규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3) 2024년 4월 1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충 설명 6.

외화의 지급 및 결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결제, 외화 차입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화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게 되며, 외화는 원화와는 다소 상이한 구조로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우선 원화의 지급과 결제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 참가한 국내 소재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듯이, 외화의 지급 및 결제는 각국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참가한 해외 소재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국내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외화의 지급과 결제는 전 세계에 소재한 지점망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은행들과의 계좌 개설, 금융전문 교환 등을 통해 주로 처리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환거래은행망(correspondent network)이라 한다. 아울러 글로벌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를 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는 다자간 합의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망이 필요한 데 SWIFT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간 금융통신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거래은행망을 통한 외화 지급 및 결제는 국가 간 시차와 영업시간 차이 등으로 신속한 지급 및 지급확인에 어려움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국내 A은행이 미국 소재 B은행 앞으로 환거래은행을 통해 미달러화를 지급하려면 국내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미국 소재 환거래은행 앞으로 지급을 의뢰해야 한다. 해당 환거래은행이 자신의 영업시간

내에 동 지급을 처리하더라도 국내 A은행은 시차로 인해 익영업일이 되어서야 해당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은행은 자신의 환거래은행 내 계좌 내에 여타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예치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영업시간 내에 외화 지급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서는 ‘국내은행 간 외화자금 이체시스템’, 해당 통화국 입장에서는 ‘역외청산시스템(off-shore clearing system)’이라 한다.

한편 원화를 매도하고 미달러화를 매수하는 거래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원화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미달러화는 환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수취하기 때문에 원화 지급 후 거래 상대방이 미달러화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금리스크(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BIS CPSS²⁾는 외환결제리스크 감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특수은행(CLS은행)을 미국 뉴욕에 설립(1999년)했으며, 현재 전 세계 18개 통화 간 외환거래가 동 은행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원화는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2004년 동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었다.

CLS은행은 모든 결제통화국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며 각국에서 CLS은행 앞으로 매도 통화 금액을 납입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매수 통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1) 국내 금융기관들 간 지급하는 금액과 수취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부족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익영업일까지 역외 청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은행의 환거래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2) BIS CPSS는 2014년 9월에 BIS CPM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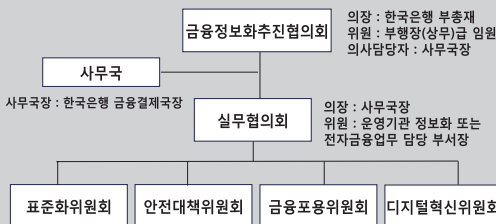
보충 설명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개요 및 구성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해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이다.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거쳐 2009년 8월 자율적 민간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의장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 산하에 4개(표준화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금융포용위원회, 디지털혁신위원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기관(7), 금융유관기관(6)이 참여 중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조직도



자료: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가기관(2023년 말 현재)

구분	참가기관명
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수협, 기업, SC제일, 산업,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비은행 금융기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손해보험, BC카드,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금융 유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자료: 한국은행

주요 업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금융 부문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대책과 표준을 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외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방안 마련, 국민들의 모바일을 이용한 ATM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QR코드 방식 입·출금서비스 도입, 디지털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전자지갑 보안 및 관리 안내서 발간 등을 추진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

사 업 명	시 기
현금자동인출기(CD/ATM) 공동망 구축	1988
ARS공동망 구축	1989
타행환공동망 구축	1989
직불카드공동망 구축	1996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구축	1996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구축	1997
전자화폐(K-Cash) 공동망 구축	2001
전자금융공동망 구축(ARS공동망의 확대 개편)	2001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02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2004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구축	2005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시스템 공동 구축	2010
국가 간 ATM망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2010
현금IC카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12
모바일현금카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19
금융권 ATM DB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2021
모바일현금카드 기반 공동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2023

자료: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주요 금융 표준 제정 및 안전대책 업무 추진 목록

업무 추진 목록	시 기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1995
펌뱅킹 서비스 파일 포맷 표준 제정	1996
금융IC카드 폐쇄형 표준 제정	1997
금융IC카드 개방형 표준 제정	2003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 규격 표준 제정	2007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2008
금융IC카드(개방형/폐쇄형 통합) 표준 제정	2009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	2010
금융microSD 표준 제정	2012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2016
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 제정	2019
모바일 현금카드(HCE방식) 표준 제정	2019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2021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21
전자지갑 보안 및 관리 안내서 작성·배포	2023

자료: 한국은행